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안)

의 안	-67
변 호	

제출년월일 : 1997.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설치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97. 1. 1자로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에 따라 금번 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농촌지도소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농촌지도소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96-1번지

다. 소관업무를 정함(안 제3조)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 농촌생활개선
- 농촌경영 개선지도
-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
-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 농민교육 및 지도
-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함(안 제4조)

마.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부지구지소를 둔다(안 제5조)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지도소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91-6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지도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 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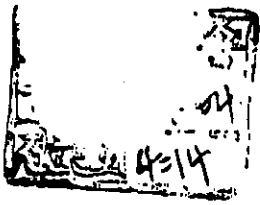
제5조 (지소설치)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부지구지소를 둔다.

제6조 (공무원)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등경기, 일류한국 ·

경 기 도

☎ 441-701 수원·권선·매산로3가1 / ☎(0331)249-4094 / FAX 249-2228 담당 임명록

문서번호 자치 12200 - 686
 시행일자 1997. 3. 11. (년)
 (경유)

받 을 받는곳 참조
 참 조

선결	과장	3/11	지	
결	일자	97. 3. 11	시	
수	번호	1527	결	계정
처 리 과			재	기
담 당 자	이계환		공	
			람	

제 목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표준(안) 시달 * 2/20 각과·각청장·동인회·지청과장

농촌진흥조직의 지방직 전환('97.1.1)에 따른 농촌지도소설치조례및운영조례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준수

· 지도소장 및 과장·담당관 직급(별표 3)

- 지도소장 :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 과장·담당관 :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 기구의 설치

· 조례 : 지도소 및 지소설치에 관한 사항

· 규칙 : 지도소 하부조직(상답소 포함)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덧붙임 :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자치행정과장 전결



받는곳 : 러

○○○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 (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군)에 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지도소 위치는 경기도 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지도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 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휘원, 채소, 과수, 화훼, 목축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 (군수)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지소설치) 지도소의 업무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소장 밑에 ○○지소를 둔다.

제6조 (공무원)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대면 결제

☎ 441-701 수원·권선·매산로3가1 / ☎(0331)249-4094 / FAX 249-2228 담당 임명묵

문서번호 자차 12200.- 83/
 시행일자 1997. 3. 26. (년)
 (경유)
 받 음 받는곳 참조 (파주)
 참 조

선결	시 장	지	
접	일자 시간	결	부시장
	1997. 3. 27		홍
수	번호	재	주 장
	2755		크
처 리 과		공	과 장
			김
담 당 자	이정현	람	계 장
	김		박

제 목 농촌지도소장 및 과장직렬 조정승인

1. 관련 문서대호 : 따로붙임.

2. 위호로 승인 신청한 농촌지도소장 및 과장직렬 조정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정원 (직렬) 조정 승인서 1 부. 끝.

경 기 도 지



받는곳 : 러 (01, 03, 04, 05, 07, 10, 13, 15, 20, 23, 25~29, 31)

관련 문서대호

- 수원 시정 12200 - 350 (' 97. 3. 15)
- 의정부 총무 13060 - 435 (' 97. 3. 19)
- 안양 시정 12200 - 301 (' 97. 3. 19)
- 부천 시정 12200 - 807 (' 97. 3. 20)
- 평택 총무 12200 - 462 (' 97. 3. 18)
- 고양 총무 12200 - 661 (' 97. 3. 18)
- 남양주 총무 12200 - 506 (' 97. 3. 18)
- 시흥 총무 12200 - 518 (' 97. 3. 21)
- 파주 총무 12110 - 734 (' 97. 3. 17)
- 여주 내무 12210 - 754 (' 97. 3. 20)
- 광주 내무 12113 - 527 (' 97. 3. 17)
- 연천 내무 12120 - 662 (' 97. 3. 18)
- 포천 내무 12100 - 615 (' 97. 3. 17)
- 가평 내무 12200 - 592 (' 97. 3. 18)
- 양평 내무 12200 - 668 (' 97. 3. 15)
- 김포 내무 12200 - 667 (' 97. 3. 19)

정원 (직렬) 조정 승인서

1997. 3. 27.
경기도시청

기 관 별	직 렬	정원	비 고
고 양 시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관	△3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3	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소 계	0	
남양주 시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관	△3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3	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소 계	0	
시 흥 시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관	△1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1	지도소장
	소 계	0	
파 주 시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관	△4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4	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소 계	0	
여 주 군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관	△4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4	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소 계	0	

※ 정원시행일 : 조례·규칙 공포시

— 이 하 여 백 —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 개정 1995. 5.16 대통령령 제14647호 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 1996. 8.22 대통령령 제15140호 1996.11.18 대통령령 제15167호(지방공무원임용령)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94.12.31 내무부령 제638호) 전문개정 1997. 2. 4 내무부령 제7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地方自治法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등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 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개정 97·1]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②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군·구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농촌진흥원에는 원장(농촌지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농촌진흥원·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7·1) ⑤농촌진흥원에 지도국·시험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과·팀, 농촌지도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1)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안)

의안	268
번호	

제출년월일 : 1997. 4. .

제 출 자 : 파주시장

1. 제안이유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현실적 행정수요를 감안, 민원부서·사업부서를 중점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구·인력을 조정

상수도사업을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수도과를 신설하며 시정정보센타내에 민원봉사계를 신설하여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도시·교통분야의 기구인력을 보강하고자 파주시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시본청의 정원을 383명에서 401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제1호)
- 나. 직속기관의 정원을 146명에서 143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제3호)
- 다. 사업소의 정원을 55명에서 49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제4호)
- 라. 출장소의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제5호)
- 마. 읍면동의 정원을 352명에서 344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제6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시본청 정원 '383'을 '401'로하고, 동조 제3호중 직속기관 정원 '146'을 '143'으로, 동조 제4호중 사업소의 정원 '55'를 '49'로, 동조 제5호중 출장소의 정원 '11'을 '10'으로, 동조 제6호중 읍면동의 정원 '352'를 '34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파주시의 본청 · 소속기관 및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원의 총수) ----- ----- -----.							
1. 시 본 청 : <u>383명</u>	1. 시 본 청 : <u>401명</u>							
2. (생 략)	(현행과 같음)							
3. 직속기관 : <u>146명</u>	3. 직속기관 : <u>143명</u>							
4. 사 업 소 : <u>55명</u>	4. 사 업 소 : <u>49명</u>							
5. 출 장 소 : <u>11명</u>	5. 출 장 소 : <u>10명</u>							
6.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352명</u>	6.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344명</u>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파주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 청 : 383명
2. 의회사무국 : 19명
3. 직속 기관 : 146명
4. 사 업 소 : 55명
5. 출 장 소 : 11명
6.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52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본청·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 개정 1995. 5.16 대통령령 제14647호 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 1996. 8.22 대통령령 제15140호 1996.11.18 대통령령 제15167호(지방공무원임용령)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94.12.31 내무부령 제638호) 전문개정 1997. 2. 4 내무부령 제7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地方自治法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방공무원, 기능직 5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 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 동일 제급내에서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 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해당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신설 95·12·28>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 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5·5·16> 1. 본 청 2. 의회사무기구 3. 직속기관 4. 출장소 5. 사업소 6. 자치구가 아닌 구 7. 읍·면·동 및 그 출장소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신설 97.1>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7.1> 제6장 보 칙 제22조(시정요구)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 및 이 영에 의한 내무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1>	